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자(국민학교 학생)를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 : 13세이상 20세이하인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 의무경찰, 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일반 : 21세이상 64세이하인자를 말한다.
4.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에 설치된 모든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5조(입장료 징수등) 입장료는 대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 와 같다.

②제1항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시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자 및 65세이상인자
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 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 유공자
8. 휴양림내 동식물을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제8조(요금표의 게시) 자연휴양림 내에는 별표1.2호 서식에 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세입조치) 도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충청북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며, 시·군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시·군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입 장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일 반	청소원, 군인	어 린 이	비 고
개 인	7 0 0	5 0 0	3 0 0	
단 체	5 0 0	3 0 0	2 0 0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 용 기 간	요 금	비 고
주 차 료	• 소 . 중형차량 (승용, 봉고차)	1 대 / 1 일	1,000	* 1일 사용료는 익일 11시까지로 하며 11시 이후는 추가요금 징수
	• 대형차량 (버스, 화물차)	1 대 / 1 일	2,000	
산 막 (봉나무집)	• 소 형 (5명 미만)	1 등 / 1 일	10,000	
	• 대 형 (6명 이상)	1 등 / 1 일	20,000	
캠 프 화이어장		1 회 사용	20,000	엠프시설 포함
우투캠프장		개소 / 1 일	3,000	주차및 야영 4-5 인용 텐트 1 조
야영장		개소 / 1 일	2,000	야영 4-5 인용 텐트 1조
정 자	• 소 형 (2명 미만)	개소 / 1 일	2,000	
	• 대 형 (2명 이상)	개소 / 1 일	3,000	
평 상	• 소 형 (2명 미만)	개소 / 1 일	1,000	
	• 대 형 (2명 이상)	개소 / 1 일	2,000	
낚시매장	• 어 린 이	1회 입장시	2,000	낚시 배여포함
	• 청소년, 성인 일 반	1회 입장시	3,000	
테니스장		시 간 / 당	2,000	